

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464
----------	------

2025년 2월 24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년 2월 3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: 2025년 2월 5일
- 다. 상정일자: 제32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5년 2월 2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기후환경본부 권민 본부장)

- 가. 제안이유
- 양천주민편익시설은 자원회수시설로부터 환경상 직·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생활향상을 도모하며,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.
 -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주민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중이며, 2025. 6. 30.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- 위탁사무명: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
 - 위탁기간: 3년('25. 7. 1. ~ '28. 6. 30.)
 - 민간위탁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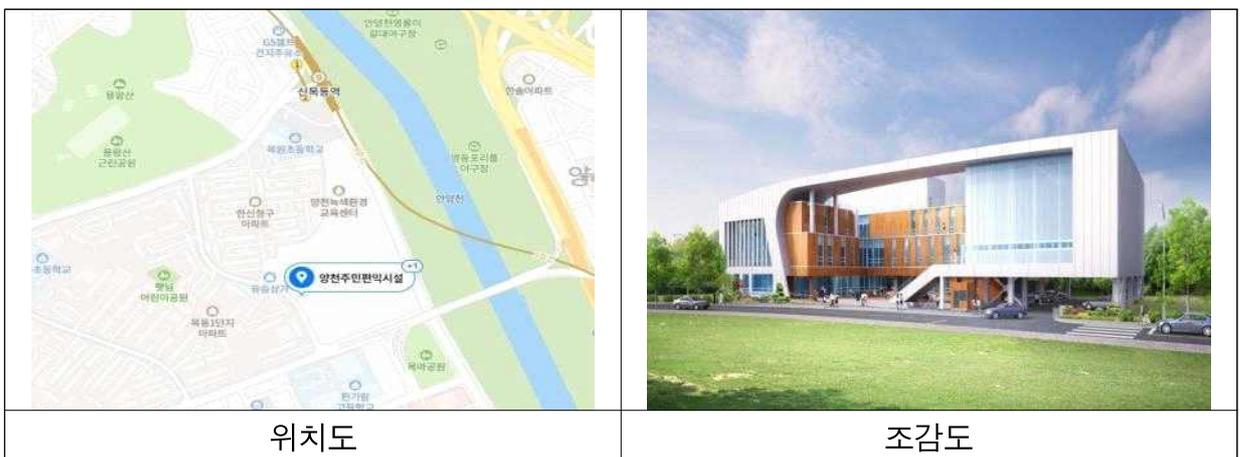
- 주변영향지역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

4) 위탁사무 내용

- 편익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
-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
- 부대시설(주차장 등) 설치 및 관리
- 주민이용자의 소통체계구축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편익증진
-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

5) 시설 개요

- 시설명: 양천주민편익시설
- 소재지: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
- 규 모: 지하3층/지상3층
- 연면적: 5,841.52 m^2
- 주요시설: 수영장, 골프연습실, 헬스장, 독서실 등
- 준공년월: 1999. 4.(2016. 7. 리모델링)
- 이용대상: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
- 주요 시설 사진



6)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※ 2025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('25. 1. 16.)

7) 소요예산: 운영비 지원 없음(시설이용료 징수 수익금으로 운영)

8) 기대효과

-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시설 운영을 통한 효율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
- 민간 운영을 통해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기대
- 서울시 별도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여 예산 절감 효과 기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
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
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: 박귀수)

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민간위탁 조례”)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임.

<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>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나. 검토의견

1)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 현황

- 서울시는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1999년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.

동 시설은 연면적 5,842㎡(지하 3층과 지상 3층) 규모로 수영장, 헬스장, 골프연습장 및 독서실 등으로 활용되어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서울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(서울YMCA)이 위탁 계약을 통해 8차에 걸쳐 자립형¹⁾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,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은 20~40% 할인된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.

1) 서울시 예산지원 없이 시설이용료 수익금으로 운영

<양천주민편익시설 일반 현황>

시설명	양천주민편익시설
위치	양천구 목동서로 20
개관일	'99. 09. 01.
수탁기관	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(서울YMCA)
민간위탁유형	자립형
위탁기간	'22.07.06.~'25.07.05.
규모(연면적)	5,841.52m ² (지하 3, 지상 3)
용도	수영장, 헬스장, 골프연습장, 독서실 등
주변영향지역 주민이용료 할인율	20~40%(프로그램별 상이)
주관부서	자원회수시설과

2)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

- 본 동의안은 양천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2)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.

이는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와 “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”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음.

<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>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~2. (생략)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(생략)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~8. (생략)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- 2) 제8조(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

2.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2]

양천주민편익시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

3)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
-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 사무명, 추진근거 및 필요성, 위탁사무 내용,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중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는 본 동의안 제출 이후 추가로 제출되었음.

<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>

제4조의4(민간위탁 동의안)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민간위탁기간
6. 수탁자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
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4) 민간위탁 추진 절차

- 양천주민편익시설은 2025년 6월 30일자로 현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25년 1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된 이후³⁾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적정⁴⁾으로 결론지은 바 있는 등 민간 위탁 추진 절차⁵⁾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.

<2025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>

부서명	위탁사무명	유형	現수탁법인	위탁기간	심의결과
자원회수시설과	양천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	자립형/ 재위탁	서울기독교청년회유 지재단(YMCA)	3년 이내	적정

3)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(자원회수시설과-410, '25.1.10.)

4) 2025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(자원회수시설과)(조직담당관-622, '25.1.16.)

5) 민간위탁 재위탁(공모) 사업은 사전조사 → 추진계획 수립 →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→ 시의회 보고(동의) → 시의회 의결 →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.

5) 종합의견

- 본 동의안은 8차에 거쳐 자립형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양천주민편익 시설에 대해 현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,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,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.
- 제출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⁶⁾에 따르면, 종합평가 결과는 77.78점으로 양호한 수준이며, 최근 3년간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음.

다만,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상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중 2022년에는 자체 위험성 평가 미실시,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미흡 등 15건과 2023년에는 취업규칙 개정 사항 미반영, 노동자 의견 정취 미흡 등 4건, 총 19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,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6)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-양천주민편익시설-(’24.09., 서울특별시)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46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2월 3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양천주민편익시설은 자원회수시설로부터 환경상 직·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향상을 도모하며,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
- 나.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주민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중이며, 2025. 6. 30.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
- 나. 위탁기간 : 3년 ('25. 7. 1. ~ '28. 6. 30.)
-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 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○ 필요성

-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운영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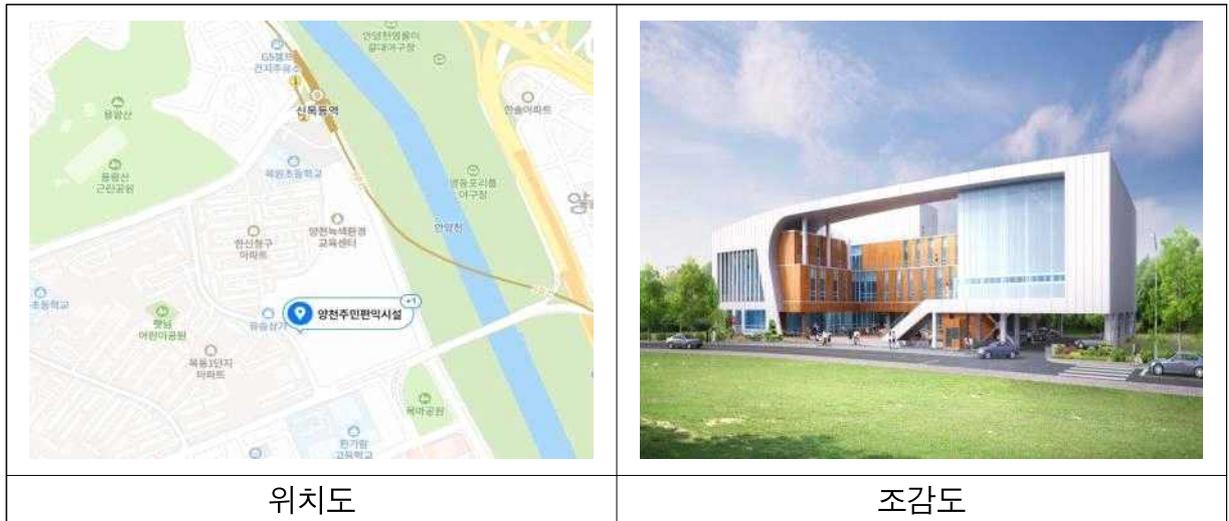
라. 위탁사무 내용

- 편익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
-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
- 부대시설(주차장 등) 설치 및 관리
- 주민 이용자의 소통체계 구축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편익 증진
-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

마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양천주민편익시설
- 소재지 :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
- 규모 : 지하3층/지상3층
- 연면적 : 5,841.52 m^2
- 주요시설 : 수영장, 골프연습실, 헬스장, 독서실 등
- 준공년월 : 1999. 4. (2016. 7. 리모델링)
- 이용대상 :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

○ 시설 위치도 및 조감도

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사. 소요예산 : 운영비 지원 없음(자립형으로 시설이용료 수익금으로 운영)

아. 기대효과

-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운영·관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
- 민간 운영을 통해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기대
- 서울시 별도 예산 지원없이 운영하여 예산절감 효과 기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제20조(주민편익시설의 설치)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 기금에 출연(出捐)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제8조(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
2.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2]

양천주민편익시설	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민경훈 (☎2133-3699)